



제 987 호

2011년 6월 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1- 698호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2
- 공고 제2011- 706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인천도시철도 2호 선 건설사업 215공구) 5
- 공고 제2011- 70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인천도시철도 2호 선 건설사업 201,216공구) 9
- 공고 제2011- 7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입법예고 공고 13
- 공고 제2011- 711호 2011.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공고 31
- 공고 제2011- 716호 2011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모집 공고 33
- 공고 제2011- 71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위반 사전처분 반송분 공 시송달 공고 34
- 공고 제2011- 721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5
- 공고 제2011- 726호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 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37
- 공고 제2011- 727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사허가에 따른 공고 38
- 공고 제2011- 730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 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40
- 공고 제2011- 731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 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70
- 문화예술 회관공고 제2011- 7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고 72

고 시

- 고시 제2011- 46호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개발제 한구역 제외)고시 77
- 고시 제2011- 4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79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698호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 5.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11. 1. 1 기준
- 대 상 : 42,115필지
- 결정·공시일 : 2011. 5. 31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1. 6. 1 ~ 6. 30 (30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등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 방 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2)453-2480

[별지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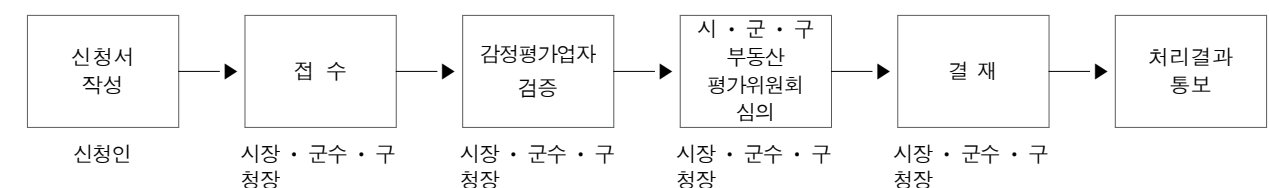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706호

**도시철도사업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15공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사업“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15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공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15공구>
3.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6. 3. ~ 6. 17.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453-2713)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신청내역(토지)

(단위 : 원, m')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동)	지 번		지 목	면적	지분	손실보상금	소유자	비고
			분할전 (세목고시)	분할후						
1	6	장수동	606-11	606-36	전	314	1/1	165,582,660	윤창환	
2	7	장수동	606-32	606-40	답	131	1/1	69,080,660	"	
3	10	장수동	606-9	606-34	전	407	1/1	232,668,330	"	
4	11	장수동	606-29	606-29	답	171	1/1	90,801,000	"	
5	51	운연동	110	110-2	답	587	1/1	159,859,660	김태성	
합 계								717,992,310		

수용재결 신청내역(지장물)

(단위 : 원, m²)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종류	구조·규격	면적·수량	손실보상금	소유자	비고
1	9	장수동 606-34	소 계			53,170,070	윤창환	
			감나무	R=14	5주	7,016,660		
			배나무	R=13	18주			
			눈주목	R=10	43주			
			은행나무	R=18~42	40주			
			밤나무	H=4	2주			
			포도나무	H=1.0	46주			
			복숭아묘목	H=1.0	32주			
			잣나무	R=16	8주			
			고엽나무	R=14	41주			
			가죽나무	R=15	16주			
			자두나무	R=10	77주			
			매실	H=3.0	4주			
			단풍나무	H=4.0	2주			
			산초	H=2.0	1주			
			농장관리사	조립식	85.45m ²	34,180,400		
			원두막	B=4 X L=7	28.0주	1,016,660		
			장독대	B=1.2 X L=3	3.6주	131,660		
			비닐하우스	B=7.0 X L=22.7	158.9주	4,025,460		
			비닐하우스	B=5.4 X L=10.0	54.0주	882,000		
			무궁화묘목	H=1.0	50주	78,330		
			관정	B=1.0 X L=0.7	0.7m ²	1,300,000		
			은행나무묘목	H=0.5	1,000주	2,733,330		
			콘크리트포장	B=3.1 X L=8.8	27.28m ²	445,570		
			수 조	B=3.1,L=8.9,H=1.1	15.50m ²	310,000		
			잡자재		1식	250,000		
			전기시설	3KW	1 식	300,000		
			전기시설	5KW	1 식	500,000		

수용재결 신청내역(영업권)

(단위 : 원, m²)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종류	구조·규격	면적·수량	손실보상금	소유자	비고
1	9	장수동 606-34	레인보우 왕자두농장			7,556,530	윤창환	
			축산보상(휴업)		1식			
			닭		600마리			
			개		45마리			
			염소		1마리			
			견사	B=1.3 X L=1.0	1.3m ²			
			견사	B=1.6 X L=1.7	2.7m ²			
			견사	B=2.7 X L=1.2	3.2m ²			
			견사	B=3.7 X L=2.5	9.3m ²			
			견사	B=3.0 X L=1.3	3.9m ²			
			견사	B=0.6 X L=0.5	0.3m ²			
			닭장	B=6.0 X L=1.3	7.8m ²			
			닭장	B=8.0 X L=2.9	23.2m ²			
			닭장	B=3.0 X L=3.0	9.0m ²			
			닭장	B=10.0 X L=2.2	22.0m ²			
			염소집	B=3.0 X L=2.7	8.1m ²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707호

**도시철도사업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01, 216공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철도사업“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01, 21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공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01,216공구>
3.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6. 3. ~ 6. 17.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453-2713)
6.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 신청내역(토지)

(단위 : 원, m²)

연번	공구	조서 번호	소재지 (동)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손실보상금	소유자	비고
				분할전 (세목고지당시 편입면적)	분할후						
1	201	28	서오류동	352 (2,523)	352-1	전	2,037	1/1	723,135,000	송정순	
2	216	1	남동구 운연동	110 (666)	110-3	답	73	1/1	19,758,660	김태성	
3		37	남동구 운연동	146-3 (599)	146-5	전	81	1/1	25,066,200	김진영	
					146-6	전	424	1/1	131,173,120	김진영	
4		49	남동구 운연동	165 (694)	165	전	694	1/1	238,118,660	김순남	
5		52	남동구 운연동	166-3 (3,583)	166-3	답	3,583	1/1	1,062,083,000	배종식	
6		63	남동구 운연동	176-1 (2,945)	176-1	전	2,945	1/1	823,834,830	정금수	
7		64	남동구 운연동	176-2 (2,330)	176-2	전	2,330	1/1	645,261,860	이수림	
8		68	남동구 운연동	180 (1,712)	180-5	전	1,236	1/1	346,492,000	김진명	
9		69	남동구 운연동	180-3 (1,306)	180-6	전	831	1/1	232,957,000	김진명	
10		76	남동구 운연동	185-2 (3,653)	185-2	답	3,653	1/1	1,001,671,330	조숙자	
11		79	남동구 운연동	192 (1,368)	192-3	답	1,113	1/1	309,717,800	김창오	
12		80	남동구 운연동	192-2 (836)	192-4	답	172	1/1	51,886,660	김창오	
13	85	남동구 운연동	산91-5 (598)	산91-6	임	207	1/2	9,073,500	김영옥		
							1/2	9,073,500	김영은		
합 계									5,629,303,120		

수용재결 신청내역(지장물)

(단위 : 원, m²)

일련 번호	공구 번호	조서 번호	소재지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및수량		지급액	소유자	비고
1	201	1	서 구 오류동	352-1	지장물계			2,075,000	송정순	
				요목	무궁화	1.537	주	2,075,000		
2	216	12	남동구 운연동	146-5 146-6	지장물계			1,200,000	김진영	
				비닐하우스	아치형	47.6	m ²	820,000		
				헛개나무	6년 H=3.5	2	주	80,000		
				앵두나무	6년 H=2.0	2	주			
				오가피	6년 H=2.0	2	주			
				이동식화장실		1	개소	300,000		
3	216	25	남동구 운연동	176-1	지장물계			35,082,050	정금수	
				가축	닭30, 개15			300,000		
				가건물	조립식판넬 창고용	24.4	m ²	3,660,000		
				관정	심도17m 25mm지상펌프	1	개소	1,200,000		
				비닐하우스	농업용	41.04	m ²	738,720		
				양계장		40.5	m ²	350,000		
				건사	독재	15	식	225,000		
				매실나무	10년 H=2.5	452	주	25,473,330		
				밤나무	30년 H=8.0	13	주			
				은행나무	30년 H=8.0	3	주			
				목련나무	30년 H=8.0	5	주			
				복분자	10년 H=1.0	200	주			
				염나무	20년 H=6.0	45	주			
				강나무	3년 H=1.0	103	주			
				느릅나무	30년 H=8.0	5	주			
				보리수나무	H=4.5	3	주			
				화살나무	H=1.2	6	주			
				포도나무		7	주			
				헛개나무		20	주			
				두충나무		3	주			
				호두나무		3	주			
				왕벚나무		5	주			
				벽오동		3	주			
				물나무		1	주			
				등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자두나무		2	주			
				오가피		25	주			

					뽕나무		2	주				
					개나리		50	주				
					화장실		2	개소				
					대문		1	개소				
					울타리	철조망.일부철크스	185	m		2,775,000		
					개나리		50	주		60,000		
					전기	30kw	1	식		300,000		
4	216	47	남동구 운안동	180-5	지장물계					150,000	김진영	
					밤나무	H=5.0	3	주		150,000		
합 계										38,507,05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7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5.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남동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소래역사관」이 금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어, 역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사관 운영 및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 도모.

3. 주요 제정내용

- 가. 소래역사관 개관에 관한 사항(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및 이용료 등)
- 나. 소래역사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유물·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수집대상, 구입·기증·기탁 및 관리·대여)
- 라. 소래역사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대관범위, 대관허가, 대관료 등)
- 마. 소래역사관 위탁운영 및 경비 보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32, FAX 453-213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우리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소래역사관」 건립이 금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 소래역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사관 운영 및 지역문화와 전통의 보존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 도모

☐ 주요내용

- 소래역사관 개관에 관한 사항(개관일,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 소래역사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유물·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집대상, 유물평가위원회, 구입·기증·기탁 및 관리·대여 등
- 소래역사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 대관범위, 대관허가, 대관료, 대관자 준수사항 등
- 소래역사관 위탁운영 및 경비 보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관람자·대관자·수탁자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화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시설을 갖춘 역사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자료”라 함은 역사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민속 등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장품”이라 함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5. “이용”이라 함은 역사관의 수장품에 대해 모사, 사진촬영, 복제, 복사, 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역사관의 수장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대관”이라 함은 역사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2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관 유물·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수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향토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4.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개관 및 관람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역사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사관의 수장품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역사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자(단, 주민등록증 및 기타

증명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급부터 3급까지로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배우자 포함,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보조자 1인 포함)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8. 국빈·외국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기관의 외빈과 그 수행자
 9. 유물·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구청장은 학술연구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장품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가 없는 만6세 이하의 아동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
6.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전시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역사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행위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사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역사관의 전시기획·운영·연구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유물·자료의 관리 및 구입에 대한 고증·평가·감정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구청장, 역사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와 전통문화,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문화재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당연직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역사관의 운영책임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유물·자료 수집 및 관리

제17조(수집 대상) 유물·자료 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장품의 구입 및 자료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유물·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제12조의 운영위원 중 유물·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위원 또는 외부 문화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유물과 자료의 고증
2. 유물의 진위여부 평가 및 가치(평가액) 산정
3. 기타 구청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개최 및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자료에 대한 고증과 평가가 필요한 때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유물·자료 구입) ① 구청장은 역사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물·자료의 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유물·자료의 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증품에 대한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물·자료의 기탁) ①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및 반환 시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기탁 받은 자료는 역사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지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제24조(유물·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취득한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의 망실·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수장고 관리) ①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고설치 등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수장품 대여)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박물관 운영과 자료의 원형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7조(대여 조건) ①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할 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대관

제29조(대관허가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본관 2층 전시홀 및 다목적시청각실과 야외공연시

설에 한한다.

제30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역사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대관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역사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의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역사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4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3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역사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역사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기타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제3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역사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판매소,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관리 · 운영의 위탁

제3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역사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역사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역사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남동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 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운영 신청) 역사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역사관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3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4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역사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역사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수입·지출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같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 관리) ① 수탁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3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역사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역사관 관리·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33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역사관의 시설

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보전 및 역사관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역사관 관람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범 위	비 고
	개 인	단 체		
어 른	500원	300원	·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청소년 · 군인	300원	200원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및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포함)	
어린이	200원	100원	·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1.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 단, 단체관람시 어린이 단체요금을 적용

[별표 2]

역사관 수장품 이용료(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사 진 촬 영	1 점	1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5,000원	
탁 본	1 점	10,000원	
모 조	1 점	10,000원	

[별표 3]

역사관 시설 대관료(제3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시청각실(60석)	1일	50,000원	장비시설 사용 포함
전시홀(141.91㎡)	1일	30,000원	㎡ 당 200원 기준
야외공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제30조제1항 관련

소래역사관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기관단체명)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자택 (	사무실)	
신청내역	사용시설			
	사용일시			
	사용인원	총 명(남 여)		
	사용목적			
	협조사항			
	변경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역사관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38조 관련

소래역사관 위탁운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탁시설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8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711호

2011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공고

남동구청에서는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 및 행정체험을하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1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모집기간 : 2011. 6. 7 ~ 6. 13 (5일간)
- 접 수 처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 근무기간 : 2011. 7. 1 ~ 7. 29 / 09:00 ~ 18:00 (21일간, 주5일 근무)
- 모집인원 : 50명 이내
- 보 수 : 875,000원 (1일 35,000원) - 교통비, 식비포함
- 근무내용 : 현장근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자격요건
 - 공고일(2011.06.01)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2009년 하계 ~ 2011년 동계) 우리구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
 - ※ 제외사항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학의 개념이 없는 대학 제외, 휴학생 및 유학생(해외대학) 제외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30% 이내)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 신청서 기재사항 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부자가정 자녀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11. 6. 17(금) 16:00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 (희망시 참관 가능)
- 최종선발자 공고 : 2011. 6.17(금) 18:00/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선발자 서류제출 : 재학증명서 1부 제출
 - 제출기한 : 2011. 6. 20 ~ 6. 22 (3일간) 09:00 ~ 18:00
 - 제 출 처 : 남동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최종선발자는 근거리 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0)로 문의바랍니다.

2011. 0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1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신청서

신	성	한 글		주민등록번호	
	명	한 자		연 락 처	집 : 핸드폰:
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학 교 명		학부 · 학과명		
인	남동구 부업경력	년도(동,하계)	근 무 부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및 모·부자가정자녀 수 급 여 부	대상(해당에 ○표) (수급자 / 모·부자) 비대상	워드, 엑셀 가 능 여 부		

상기와 같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06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최종 선발자 공고 : 2011. 06. 17(금) 18:00/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부 (※미제출시 선발자격 상실)
-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출기한 : 2011. 06. 20 ~ 06. 22 (3일간) 09:00 ~ 18:00
- 제 출 처 : 남동구청 5층 총무과 자치행정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제2011-716호

- 2011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
조 사 원 모 집 공 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소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책임감 있는 조사요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일자 : 2011. 6. 1(수) ~ 2011. 6. 9(목)
- 접 수 처 :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관련 서류 지참)
- 채용인원 : 19명
- 근무기간 : 2011. 6. 20(월) ~ 2011. 8. 11(목)
- 근무시간 : 월 ~ 금, 일 8시간 (09:00 ~ 18:00)
- 근무내용 : 남동구 소재 도로, 공공기관,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
- 임 금 : 35,000원(일)
- 자격요건
 - 만19세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사용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공공기관 통계조사 등 유경험자 우대
- 채용결과안내 : 2011. 6. 15(수) ※채용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 제출서류
 - 조사요원 지원서 1부(남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노인장애인과(☎453-2524)로 문의바랍니다.

2011. 6.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1 - 717호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성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사전내용	비고
강순식 (일반화물)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밤샘주차 (2011.03.31) (00:10 ~ 01:22)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인천84바9489
권오성 (개별화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밤샘주차 (2011.04.14) (00:59 ~ 02:13)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8927
정천식 (개별화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밤샘주차 (2011.04.28) (11:56 ~ 01:05)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7651

2. 공시송달기간 : 2011.05.31 ~ 2011.06.14 (15일간)

3. 내 용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차고지외 밤샘주차)
준수사항 위반

4. 참고사항

: 처분사전 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11.06.14일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453-2914)로 오셔서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 FAX453-291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721호

취득·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이순재외12명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1년 5월 수시분 취득·등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1년 5월 수시분 취득·등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1.5.31일을 2011.6.30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 6. 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득등록세 2011. 5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이순재	631008	101001-2011-05-2-650-008577	수취인미거주	1711180
2	취득세	유병화	600915	101501-2011-05-2-800-015140	수취인미거주	47460
3	취득세	이순금	641220	101501-2011-05-2-660-015148	수취인미거주	146820
4	취득세	고영선	710215	101501-2011-05-2-530-015305	수취인미거주	4861070
5	등록세	강성구	650701	101501-2011-05-2-530-015306	수취인미거주	1377530
6	취득세	김미향	610608	101501-2011-05-2-530-015308	수취인미거주	1146920
7	취득세	김화영	681024	101501-2011-05-2-580-015315	수취인미거주	1713250
8	취득세	조규석	750930	101501-2011-05-2-510-015317	수취인미거주	742390
9	취득세	한영옥	530221	101501-2011-05-2-660-015324	수취인미거주	2040230
10	취득세	김지현	750328	101501-2011-05-2-520-015327	수취인미거주	1709690
11	취득세	임희분	490318	101501-2011-05-2-522-015335	수취인미거주	1479950
12	취득세	양명철	630405	101501-2011-05-2-670-015343	수취인미거주	117180
13	취득세	이향숙	610215	101501-2011-05-2-670-015350	수취인미거주	1124783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7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남동구 간석동 고영주 외 3인
- 공 고 기 간 : 2011. 6. 3. ~ 2011. 6. 23.(21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접수 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행정 처분	법적근거
	일시	장소	차량번호	신고내용			
2011. 02.16	11.02.14 10:20~ 10:27	송내 남부역	인천30바3117	장기정차여객유치	양영수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1. 02.16	11.02.14 14:36	김포공항	인천30바7114	복장위반	김정수	경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1. 02.21	11.02.19 10:45~ 11:04	송내 남부역	인천30바2100	장기정차여객유치	염주석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2011. 03.30	11.03.24 15:38~ 15:52	송내 남부역	인천32바1461	장기정차여객유치	고영주	과태료 1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납부기일 2011.06.23.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727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사허가에 따른 공고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공사허가를 하고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주)한화건설(☎032-446-80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하수관거정비
 - (2) 명 칭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한화건설
 - (2)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4. 사업의 규모
 - 하수관거 설치 D800~1200mm, L=193.44m
 - 하수박스 설치 □ 1,500×800mm, L=149.39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한화건설
 - (2)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모비딕빌딩 8층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 06 ~ 201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서

공사명 :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구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남동구	고잔동	368-3	도	6,250	10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2	"	"	379-6	도	4,002	139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3	"	"	390-18	도	3,462	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4	"	"	390-1	답	860	4	인창산업	광명시 하안동201 광명시범동단1동301				
5	"	논현동	733-47	잡	7,534	13	(주)한화외1	서울 중구 장교동 1				
6	"	고잔동	409-3	답	1,811	6	오영준	만수동1018 대동APT 104-1505				
7	"	논현동	733-52	유	2,767	4	(주)한화외1	서울 중구 장교동 1				
8	"	고잔동	586-2	도	3,893	247	국	건설부				
9	"	논현동	산106-2	임	76,548	4	(주)한화외1	서울 중구 장교동 1				
계			9필지		107,127	43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730호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 및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35, FAX 453-21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별첨1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제29조, 제31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유료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운영

제6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관 및 정보이용의 제한) ① 도서관의 입관은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관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료구입) 자료는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 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단서 조항에 따른 수시 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장과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 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한다)
7.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작은도서관

제20조(작은도서관의 정의) ①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항 가목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22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21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22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매년 10%이상의 신규 자료를 추가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3.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설비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하되, 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26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및 시설환경 개선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국민독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공립 작은도서관)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지도·감독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독서문화진흥

제3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독서 문화강좌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 문화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도서관 명칭	위 치	비 고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 지구사업지구 내 (도서관부지)	지번 미확정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8-1 (서창근린공원 내)	
간석3동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6 (3층)	
만수2동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6 (2층)	

※ 위치는 지번 확정 또는 도로명주소 표기시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제12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구분	시간		
세미나실 (문화교실)	주 간	4	20,000원	09:00 ~ 18:00
	야 간	4	30,000원	18:00 ~ 22:00
다목적실 (소극장)	주 간	4	50,000원	09:00 ~ 18:00
	야 간	4	80,000원	18:00 ~ 22:00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 시 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흑백	칼라	
복 사 기	A4	40	70	1장당
	B4	50	80	
	A3	60	90	
프 린 터	A4	50	80	
	B4	60	90	
	A3	70	100	

남동구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 운영할 수 있다.
3. 세미나실(문화교실) 및 다목적실(소극장)은 10: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휴관일(월요일)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자료의 정리, 관사 시설관리 및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른 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및 미성년자에 한함) 1부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크기 3cm × 4cm)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1. 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기한을 3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
2.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 열람실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5.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무단 집회 및 면회를 할 수 없다.
7.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8조(도서 열람) ① 도서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미성년자가 요구하는 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서의 열람 또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9조(도서 대출) ① 도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도서는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3권 이내로 한다.

③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한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 도서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출의 제한)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인영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1조(대출의 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한다.

1. 대출기한을 1월미만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일수에 10일을 추가한 일수
2. 대출기한을 1월이상 2월미만 연체한 경우에는 6월
3. 대출기한을 2월이상 3월미만 연체한 경우에는 1년

제12조(대출의 중지) 관장은 장서 정리 및 기타 도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복사) ①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 후 복사하여야 한다.

② 복사기사용수수료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기증자료) 관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및 제적)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제18조(변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변상조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작은도서관 운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을 한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제23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원 가입 신청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비밀번호 (무인 자료대출시 필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 계	회원번호								
본 인															
가족1															
가족2															
가족3															
가족4															
학 생	학 교 명	학교[과] 학년 반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직장인	직 장 명			연락처	직 장 휴대폰 자 택										
사 진 (3 × 4cm)		《[이용자 동의》 ● SMS 서비스 대출 및 반납, 행사 등에 관련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사정 및 회원님의 최신정보가 아닌 경우 정상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용 약관 동의 ()도서관 회원으로서 도서관이 정하는 이용 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보호자확인 : (서명) 담당자확인 :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도서관명)															
첨부 서류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4cm) 1매 2.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 (현 주소 미기재 신분증의 경우 주소확인을 위해 최근 주민등록등본 1부 제시) 3.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의 신분증(보호자 동의 및 확인 필요) 4. 제출하신 주민등록등본은 신분 및 현주소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illegible]

도 서 관 회 원 증

(전면)

도 서 관 회 원 증	
사진	회원 번호 :
	성 명 :
() 도 서 관 장	

(후면)

유 의 사 항
1. 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이 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도서의 훼손·분실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4.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5. 문의전화 : 032-000-000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 _____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 락 처		
공연·행사 명칭					
공연·행사 내용					
사 용 기 간	. . . ~ . . .			사용인원	명
사 용 료					
첨 부 서 류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도서관명)

----- 절 ----- 취 ----- 선 -----

접수번호 : _____

()도서관 사용신청 접수증

- 사용기간 : . . . ~ . . .
○ 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와 같이 ()도서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도서관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	☐ 문화교실 ☐ 시청각실 ☐ 부대설비(내역 :)			
사 용 기 간	. . . : ~ . . .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 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5호서식)

복 사 신 청 서

제 호 :

신청인	이 름			회원번호		
	주 소					
복사대상	자 료 명	출 판 사 명		확 인		
				대 출	반 환	
복사내용	용지크기	단 면		양 면		금 액
		단가	매수	단가	매수	
	A4		매		매	원
	B4		매		매	원
	A3		매		매	원
	계		매		매	원

위와 같이 도서(자료)의 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도서관명)

위탁자료목록

[illegible]

도서기증목록

[illegible]

(별지 제8호서식)

자 료 변 상 통 지 서

변 상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 상 도 서 명	저 자 명	도 서 명		수 량	비 고
대 출 일 시	년 월 일				
변 상 액	원 (W)				
변 상 기 간	년 월 일 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할 것을 통지합니다.

붙임 : 변상금 납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변상금 납부서

금액 원(W) (번호:)			
등록 번호	청구 번호	자 료 명	금 액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자료분실 및 훼손
변상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변상금 납부서

등록 번호	청구 번호	자 료 명	금 액

위 금액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자료분실 및 훼손
변상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자료 (분실·훼손) 신고서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인)

대 출 일	청구번호	자 료 명	비 고

※ 분실사유 :

상기 대출자료를 20 년 월 일 (분실·훼손) 하였기에 변상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제2011-7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오윤정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9년3170	홈플러스 인천논현점 (2010.10.19 16:21)	2011.05.20	2011.05.30	폐문부재
엄준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18마 1316	홈플러스 구월점 (2010.10.20 17:26)	2011.05.20	2011.05.26	수취인불명
진성근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54버7056	홈플러스 간석점 (2010.10.20 16시경)	2011.05.20	2011.05.27	폐문부재
배용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인천34더 2322	인천시청 민원실 (2010.10.26 14:50)	2011.05.20	2011.05.26	폐문부재
QUAN ZHONGMING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도6882	남동구청 (2010.10.28 14:23)	2011.05.20	2011.05.25	폐문부재
김종식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0라7496	논현휴먼시아2단지 범마을@ 211동 (2010.11.11 16:19)	2011.05.12	2011.05.24	폐문부재
한옥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1조1290	논현휴먼시아2단지 범마을@ 202동 (2010.12.21 16:57)	2011.05.12	2011.05.23	폐문부재
이성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29오8628	논현동 중앙프라자 지하주차장 (2011.01.05 10:40)	2011.05.12	2011.05.19	폐문부재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 06. 03~ 06. 2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6. 0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11 - 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년 6월 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거 남동구 여성합창단 지원업무가 남동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의 지위 상향 및 임무 수정(안 제3조 및 제8조)

나. 여성합창단의 운영 주체 변경(안 제4조)

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의 합창단원의 위·해촉 권한부여(안 제6, 7조,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437번길 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문화예술회관(전화 : 453-5182, FAX : 453-5189, E-mail : kimky7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합창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된다.

제4조(운영)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합창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② 관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제6조 중 “부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부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제10조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 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1인과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 부구청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1인과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u>합창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u>
제4조(운영) ① 합창단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제4조(운영) ① <u>합창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u> ② <u>관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u>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생략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u>풍부한 자</u>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u>관장</u> 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u>관장</u> 이 위촉한다.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u>관장</u> 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 ③ 생략	제7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u>관장</u> 은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임무) ① <u>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u>관장은</u>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실 · 과 · 소 · 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46호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11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m²

다. 지목현황 : 28개 지목

라. 고시내역 : “별첨”

2011. 5. 3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제외)

(단위 : 원/㎡)

구 분	평균치	비고
전 체	844,933	
전	392,064	
답	512,961	
과수원	223,676	
목장용지	467,809	
임야	73,158	
광천지	-	
염전	360,000	
대	1,372,939	
공장용지	919,396	
학교용지	1,209,985	
주차장	1,141,154	
주유소용지	1,725,661	
창고용지	899,958	
도로	433,635	
철도용지	365,946	
제방	205,411	
하천	217,805	
구거	390,949	
유지	307,560	
양어장	-	
수도용지	194,510	
공원	305,178	
체육용지	-	
유원지	293,000	
종교용지	925,790	
사적지	-	
묘지	589,648	
잡종지	674,107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 - 4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1. 6.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555	대3-21	소3-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	6	국지	555	대3-21	소3-8	일반도 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호선	소로3-1호선	· 도시계획선(도로선형) 일부 변경 · 면적 : 당초(3,265.0㎡) 변경(3,263.2㎡) 감(1.8㎡)	· 도시계획시설인 소3-1호선 일부 구간(도림동101-13번지)이 불합리한 선형으로 인하여 회전반경 및 시야 확보 불량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치 않아 도로선형을 변경코자 함.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